

2022학년도

전 · 편입생 입학 전형 요강



2022.8.

경희고등학교
(www.kyungheeboy.hs.kr)



2022학년도 경희고등학교 8차 전·편입생 입학전형요강

1 모집 인원 (남 8학급)

학년	구분	전형 구분	모집 인원	모집 시기
1학년	정원 내	일반전형	1	8월 17일(수)~8월 19일(금)
		사회통합전형	15 (다자녀 3)	
		체육특기자전형	13	
	정원 외	보훈자자녀전형	8	
		고입특례대상자전형	5	
2학년	정원 내	일반전형	0명	수시 모집
		사회통합전형	0명	
	정원 외	보훈자자녀전형	0명	
		고입특례대상자전형	0명	

- 1) 이후 1학년 전·편입생 모집은 9, 12월에 실시할 예정임. (귀국자 편입학, 2,3학년은 수시 모집)
단, 1학년의 경우 재학생의 전출, 자퇴 등으로 인한 결원자가 생기지 않을 경우 예정된 시기에 실시하지 못함. 3학년은 1학기 까지만 전편입이 가능함.
- 2) 지원자는 한 가지 전형에만 지원할 수 있음.
- 3) 사회통합전형 지원자 수가 모집인원을 초과할 경우 일반전형 모집 인원분에서 할당함.
- 4) '정원 외' 보훈자자녀전형은 '국가보훈대상자' 중 '교육지원대상자'만 지원 가능하며, 교육지원대상자가 아닌 기타 '국가보훈대상자'는 '정원 내' 사회통합전형 중 '기회균등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음.
- 5) 고입특례대상자는 정원 내 모집(일반전형)과 정원 외 모집(고입특례대상자전형)으로 구분됨. (요강 5쪽 참고사항 3. 고입특례대상자 참조)
- 6) 요강 p9, p11의 장학금은 신입학생 및 3월 초 1차 전편입학생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며 이후의 전편입 모집 대상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음.

2

전·편입학 전형 일정

구 분	일 시	장 소	비 고
원서접수	8월 17일(수) ~ 8월 19일(금)	본교 2층 제1교무실로 방문 접수 (노승민 선생님)	※ 접수시간 10:00~15:00 마감일은 14:00까지
공개추첨	원서 접수 마감 당일 15:00	본교 3층 세미나실	※ 추첨시 당사자 접수증 지참 후 참여 (모집인원 미달 시 추첨생략)
합격자 발표	원서 접수 마감 당일 16:00	개별 연락	
합격자 통보	합격자 발표 다음 날		현재 재적 고등학교로 전출 요청 공문 발송

※ 상기 모집 일정은 전출 및 결원 인원, 학교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함.

3

지원 자격

가. **공통자격** : 전편입학 원서 제출 시, 전 가족이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로서 다음 각 항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라 함은 원서 접수일 현재 '전 가족이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를 뜻한다.
- ※ 외국인의 경우 자국에서 직접 지원할 수도 있음.
- ※ 부 또는 모가 불가피하게 함께 이전할 수 없는 경우 4.제출서류의 필요 서류 제출

- 1)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
- 2) 고등학교 편입학 자격을 갖춘 해외 귀국자 (수시 모집)

나. 전형 유형별 지원 자격 : '가'항의 자격을 갖추고 다음 해당 전형 유형별 지원 자격을 갖춘 자

전형 구분		유형별 지원 자격		
정원 내	일반전형	'가'항의 공통자격을 갖춘 자(추가 자격요건 필요 없음)		
	체육특기자전형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입학 체육특기자 선발위원회』에서 축구 종목 체육특기자로 선정된 자		
	사회통합전형	기회균등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법정차상위대상자로서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상위 자활 대상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차상위 장애 수당 대상자, 차상위 장애 연금 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로 주민자치센터에 등록된 가구의 구성원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구 차상위계층)로 '교육급여수급자증명서'를 제출한 자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구 차상위계층)로 '교육비지원확인서'를 제출한 자 	※증명서 및 확인서 제출
		1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법정차상위대상자, 기준 중위소득 50% 및 60%이하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갑작스런 사유로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중학교장이 판단·추천한 자 ○ 교육지원대상자 외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로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원' 제출자 ※「참고자료 5」 참조 	※증명서 및 확인서, 증빙서류 제출
사회다양성전형	1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 및 제14조의2에 따른 다문화가정의 자녀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 도서·벽지가 있는 시·도의 경우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의 거주자로서 도서·벽지의 중학교 졸업(예정)자 ○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아동 ○ 소년·소녀 가장, 조손가정 자녀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의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장애 등급 1급~3급)의 자녀 ○ 순직 군경, 순직 공무원, 순직 교원의 자녀 	※2021년 가구원수별 중위소득 160% 이하	
	2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정 자녀 ○ 다자녀가정(3자녀 이상) 자녀 ○ 환경미화원의 자녀(시·도 또는 군·구 소속 환경미화원) ○ 군인(15년 이상 재직 중인 준·부사관 이하) 자녀 ○ 경찰(15년 이상 재직 중인 경위 이하) 자녀 ○ 소방공무원(15년 이상 재직 중인 소방위 이하) 자녀 ○ 목회자 또는 해외 선교사의 자녀 		
정원 외	보훈자녀전형	○ 국가보훈처에서 교육지원대상자로 지정되거나 교육지원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 「참고자료 5」 참조		
	고입특례대상자전형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특례입학자격심사위원회』에서 심사·선정되어 통보된 자		

※ 사회다양성전형은 2021년 가구원수별 중위소득 160% 이하 가정의 자녀에 한해 지원 가능

참고 사항

1. 사회통합전형 중 『기회균등전형』

가. 기회균등전형의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법정 한부모가족)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구청 및 동주민센터에서 '한부모가족증명서'가 발급됨. 동법 제4조제2호에 따른 사회다양성 전형의 한부모 가정(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자녀와는 구분

나. 기회균등전형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및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증빙 서류

- 1)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구, 차상위계층) : 교육급여수급자증명서 제출
- 2)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구, 차차상위계층) : 교육비지원확인서 제출

※ 위 증명서(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사회통합전형에 응시할 수 없음

다. 학교장 추천대상자 추천 요건

- 1) 부양의무자의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생계가 매우 곤란한 경우(실업급여 수혜 가정 등)
- 2) 가계 파산 또는 재산 압류 등으로 생계가 매우 곤란한 경우
- 3) 부양의무자의 질병·사고·장애 등으로 인해 근로능력이 없거나, 생계가 매우 곤란한 경우
- 4) 부양의무자가 자영업자로 폐업·휴업 등으로 생계가 매우 곤란한 경우

라. 기회균등전형 보호자 자녀의 조건인 「국가보훈기본법」제3조제2호에 해당되는 지원 대상

-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3조
-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4)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치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안내 사항

1 2022학년도 고입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교육비 지원 관련 안내

2022학년도 사회통합전형 시 적용된 건강보험료와 재산세 등의 기준은 교육비 지원 대상자 선정과는 별개임

※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라 하더라도 반드시 2022학년도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아님

2. 사회통합전형 중 『사회다양성전형』

가. 사회다양성전형 공통사항 : 2021년 가구원수별 중위소득 160% 이하 가정의 자녀에 한해 지원 가능

- 1) 지역 가입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함.
- 2) 직장 가입자 및 혼합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과 재산세 납부금액(연간)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함

【가구원수별 중위소득 16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및 재산세 납부금액 기준표】

(단위: 원)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재산세납부금액*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170,536	174,281	171,997	561,150
3인	220,987	238,835	224,800	899,760
4인	270,748	300,338	278,094	1,242,480
5인	321,769	356,168	337,302	1,580,880
6인	380,152	420,252	414,255	1,915,440
7인	414,255	456,308	449,388	2,249,040
8인	486,115	531,814	540,144	2,582,400
9인	540,144	583,151	634,303	2,916,000
10인	634,303	661,710	816,530	3,249,60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산정 시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건강보험료, 재산세 확인 시 **부모(이혼으로 인한 한부모가정의 경우 친부 및 친모) 모두 확인·합산하여 제도 도입 취지에 맞는 적격자 추천** (**참고자료1**, **참고자료 2** 참고)

나. 다문화가정

- 1) 결혼이민자(국적법에 따른 귀화 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와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단, 결혼 이전에 외국 국적을 가진 친부(모)가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음)
- 2) 다문화가족이 이혼 등의 사유로 해체되었더라도 그 구성원이었던 자녀에게 지원 자격을 인정함

다. 아동복지시설 보호 아동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보장시설수급권자)는 기회균등전형으로 지원

라. 다자녀가정(3자녀 이상) 자녀 : 자녀 모두 지원 가능(지원 가능 자녀수 제한 없음)하며, 학교별 선발 인원은 사회통합전형 모집 정원의 30% 이내로 제한함

3. 고입특례대상자(정원 외)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

구 분	자 격 요 건	
외국에서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 (제2호 가목)	국내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 (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함)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제2호 나목)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외국인 학생 (제2호 다목)		외국인 학생 (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외국에서 2년 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
북한이탈주민 등 (제3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의한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의 중학교에 편입하여 졸업한 자	

4. 사회통합전형 지원 자격에 대한 심의는 본교 입학전형위원회에서 실시함.

※ 기회균등전형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및 보호자 자녀는 증명서 및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심의 제외 가능

4

제출 서류

대상		유형별 제출 서류			
모든 지원자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편입학원서 1부 : 본교 홈페이지의 모집 공고 파일을 내려받아 (붙임1)의 원서 작성 제출 ○ 주민등록등본 1부 (전 가족 서울 거주 여부 확인용)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 ○ 외국학교를 졸업한 경우는 외국학교의 학력을 인증할 수 있는 각종 서류 ※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관할 재외 한국 영사관(대사관)의 공증 필요 			
일반전형		○ 위의 공통 서류 외에 추가 사항 없음.			
체육특기자		○ 체육특기자 증명서(출신중학교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발급) 1부			
사회통합전형	사회통합전형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학년도 고등학교 부정입학 방지를 위한 학부모 확인서 1부(붙임2) ○ '부' 또는 '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1부(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 			
	기회균등전형	60% 우선선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수급자증명서(구청, 동주민센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증명서 1부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증명서(구청, 동주민센터) 1부	
			법정차상위대상자	차상위자할 대상자	자활급여 대상자 확인서(구청, 동주민센터) 1부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국민건강보험공단) 1부
				차상위장애수당대상자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구청, 동주민센터) 1부
				차상위장애연금대상자	장애연금 대상자 확인서(구청, 동주민센터) 1부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서(구청, 동주민센터) 1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기준중위소득 50%이하	교육급여수급자증명서(구청, 동주민센터) 1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교육비지원확인서(학교) 1부
학교장 추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학년도 고입 기회균등전형 중 '학교장 추천자' 유형 학교장 추천서 1부(붙임3)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 자료 1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6개월 평균 납부액 확인*) • 경제적 형편이 곤란함을 증빙하는 기타 제반 서류(해당 중학교장 직인으로 원본대조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내역서(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 채권 압류 통지서, 법원 파산 결정문 사본, 폐업 확인서, 급여 명세서, 병원 진단서, 장애인 등록증,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등 - 부모의 사망, 이혼, 별거, 가출, 연락 두절 기타 가정형편으로 부모의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학교장 추천서」 또는 「자기 확인서」에 동 사실을 명기 - 어느 한 가지 서류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재산세 과세 증명 등을 받아 종합적으로 판단 				
보훈자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지원대상자 외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 				

대상		유형별 제출 서류		
사회 통합 전형	사회 다양성 전형		<p>훈대상자 확인원(관할 보건지청) 1부 ※ 「참고자료 5」 참조</p>	
		공통 (가구원 수별 증위소 득 160% 이하)	지역건강보험 가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6개월 평균 납부액 확인*)
			직장건강보험 가입자, 혼합(지역+직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6개월 평균 납부액 확인*) 재산세(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1부 ※ 반드시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전국)' 으로 발급받아 제출(동 주민센터 방문 발급, 온라인 발급 불가)
		1순위	다문화가정의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 또는 모의 기본증명서(상세) 1부
			북한이탈 주민 또는 그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1부
			특수교육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통지서 사본(원본대조필) 1부
			아동복지시설에서 보 호받는 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보육시설 재원증명서 1부 ※ 단, 만18세 미만 아동에 한함
			도서·벽지의 중학교 졸업(예정)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졸업(예정)증명서 1부
			소년·소녀 가장, 조 손가정의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실 관계 확인서 (주민센터 복지사 확인 등) 1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원본대조필) 1부 ※ 2019년7월1일 이전 발급 장애인 등록증: 장애 1~3급
순직 군경·순직 교원 ·순직 공무원의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순직 군경·순직 교원·순직 공무원의 자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2순위	한부모가정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가서류 필요 없음. (단, 공통서류인 가족관계 증명서를 '상세'로 발급받아 제출) 		
	다자녀가정(3자녀 이 상)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가서류 필요 없음. (공통서류인 가족관계 증명서로 확인함.) ※ 단, 입양으로 인한 다자녀가정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상세)로 제출 		
	환경미화원의 자녀 (사·도 또는 군·구 소속 환경미화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직증명서 1부 		
	군인 자녀(준부사관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직증명서 또는 15년 이상 근무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서류 		
	경찰 자녀(경위 이하)			
	소방공무원 자녀(소 방위 이하)			
	목회자 또는 해외 선교 사의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회자 또는 해외 선교사 증명서 1부 (붙임7) 		
보훈자자녀 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학년도 고입(사회통합·보훈자 자녀·특례대상자) 전형 학교장 확인서 1부(붙임1) ○ 2022학년도 고등학교 부정입학 방지를 위한 학부모 확인서 1부(붙임2) ○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관할 보건지청) 1부 ※ 「참고자료 5」 참조 			

대상	유형별 제출 서류
	※ 국가보훈처에서 교육지원대상자로 지정하여 통보된 자는 증명서 제출 불필요
고입특례 대상자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학년도 고입(사회통합·보훈자 자녀·특례대상자) 전형 학교장 확인서 1부(붙임1) ○ 2022학년도 고등학교 부정입학 방지를 위한 학부모 확인서 1부(붙임2) ○ 특례 입학 대상 확인서(해당 중학교 발급) 1부 : 경남, 제주 및 세종 출신 지원자만 제출

- ※ 증빙서류는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 발급한 서류에 한함.(별도의 유효기간이 설정된 서류는 제외)
-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은 영수증, 고지서, 납부확인서 중 택 1
- ※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지원자는 이에 성실히 협조해야 함.

5 전형 방법

- 가. 일반 전형 - 공개 추첨하여 선발
- 나. 사회통합전형 - 지원 자격을 갖춘 지원자 중에서 공개 추첨하여 선발
- 다. 특례입학대상자전형 - 지원 자격을 갖춘 지원자 중에서 공개 추첨하여 선발

※ 공개 추첨 방식

가) 일 시 : 2022년 8월 19일(금) 15:00

나) 장 소 : 세미나실

다) 참석인원 : 교감, 대외협력부장, 지원자 학부모님, 학교 담당 경찰관(입회)

※단, 사정에 의해 학교 담당 경찰관의 불참 시, 동영상 촬영으로 대체될 수 있음.

라) 추첨방식

- 1) 공개 추첨 전 입학전형위원회를 실시하여 지원자의 전형 및 적격 여부를 판단함.
- 2) 지원자 학부모님 앞에서 참석자 만큼의 숫자가 적힌 번호를 확인함.
- 3) 접수번호 순에 따라 지원자 또는 학부모님이 내부가 보이지 않는 통 안의 번호를 뽑아 1번부터 결원만큼의 합격자가 선발되며 다음 번호는 순차적으로 예비 번호를 부여함.
(추첨에 미참석 시, 불합격 처리됨.)
- 4) 합격자가 전입을 포기하는 경우, 순서에 따라 예비 순위자가 합격함.
(예비 번호는 본 회차의 전편입 기간에만 유효함.)

※ 지원자 수가 모집정원에 미달되거나 정원과 같은 경우 공개추첨을 실시하지 않고, 지원 자격이 충족되는 경우 합격 처리. **공개추첨을 실시하지 않을 시, 문자 메시지로 통보 예정.**

6 기타 유의 사항

- 가. 제출 서류를 갖추어 경희고등학교로 **방문 접수**. (FAX, 우편 접수 불가)
직계존속에 한하여 대리접수 가능.
- 나. 지원자는 한 가지 전형에만 지원할 수 있음.
- 다. 2022년 8월 17일(수) 10시부터 2022년 8월 19일(금) 14시 이내에 접수된 서류만 인정함.
- 라. 제출서류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한 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마. 입학원서에 기재된 개인 정보는 신입생 입학 관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에 따라 수집·이용·제공됨.
- 바. 전.편입학생 모집요강 이외의 기타 세부사항은 본교 입학전형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 사. 합격 후, 반 편성 및 장학금 지급과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제출할 수 있음.
-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교 홈페이지 및 대외협력부로 문의.
- 자. 장학금 지원

지급처	구분	지급 기준	대상(백분위)	지원 내용	지급 기간	지급 시기			
총동창회	경희인재	중학교 내신	상위 1%	등록금 전액	1-1~1-2	7월, 12월			
	고향인재 I (기회균등+사회다양성)	중학교 내신	상위 1%	매월 30만	1-1	7월			
			상위 1~3%	매월 20만	1-1	7월			
			상위 3~5%	매월 10만	1-1	7월			
	경향인재	모의고사 국수 평균 백분위	99%	영어 1등급, 탐구 1등급	등록금 전액	1-2~3-1 (4개 학기)	7월,12월		
			98%	등록금 반액					
	고향인재II (기회균등)	모의고사 국수 평균 백분위	99%	기회균등전형 입학자 등록금 전액 지원 (본교는 세부 전형구분 없이 모든 기회균등전형입학자에게 재학 중 정부 심의로 자격이 변동되어도 졸업 때 까지 등록금 전액 지원)	매월 30만			6개 학기	7월,12월
			98%		매월 20만				
			95%		매월 10만				
			상위 20%		전학기 100만 + 스쿨버스 무료				
고향인재II (사회다양성)	중학교 내신	상위 50%	전학기 50만 + 스쿨버스 무료		6개 학기			7월,12월	
		상위 80%	전학기 30만 + 스쿨버스 무료		6개 학기			7월,12월	
		상위 100%	전학기 10만 + 스쿨버스 무료		6개 학기			7월,12월	
		상위 20%	6개 학기 등록금 전액		6개 학기			7월, 12월	
상위 50%	6개 학기 등록금 반액								
상위 80%	6개 학기 70만원								
학교장	형제 인재	형제 2인 이상 재학 (쌍둥이포함)	고교 내신 50% 이내 유지	동생 1인 수업료 전액 (1-1 전원 지급) ※쌍둥이의 경우 50%이내인 학생을 동생으로 인정	6개 학기	7월, 12월			
	우수입학생	중학교 내신 40%이내 (특수목적 중학교는 60%이내)	국+수+영+탐(2과목 평균) 평균 2등급 이내	100만	1개 학기	12월			
	IT인재	정보올림피아드(국제, 한국) 입상자	해당학기 내신 20% 이내 유지	200만(총동창회 장학금과 중복 지급 가능)	6개 학기	7월, 12월			

- ※여러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액이 큰 장학금만 지급
- ※모의고사 관련 장학금은 장학금 지급 해당 학기 응시 모의고사 성적 (2회 이상 시 평균) 기준
- ※해당 학기 모의고사를 모두 본교에서 응시한 경우만 해당

<전.편입학 관련 문의>
 (우) 02447 주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이문동)
 홈페이지 : www.kyungheeboy.hs.kr
 대표전화 ☎ 02)966-3782 FAX 02)962-3649
 대외협력부 ☎ 010-4086-4059, 02)3299-3706

7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지원

가. 교육비 지원

1) 2022학년도 신입생에 대한 교육비 지원은 2022년에 시행되는 「2022학년도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기본 계획」에 따라 지원함.

※ 단, 실제 지원 여부 및 지원 내용 등은 입학 후 변경될 수 있음.

2) 교육비를 지원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육비를 신청하여야 하며, 소득·재산 등 조사 결과에 따라 교육비 지원 여부가 결정됨

○ 기회균등전형으로 입학하였다더라도 교육비 지원 자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교육비 지원 불가.

3) 참고: 「2021학년도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기본 계획」 안내

○ 학비 지원 : 법정 저소득 자격 유무 및 입학전형 유형에 따라 지원내용 상이

입학전형	구 분	지원 기준 및 지원 범위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중위소득 60% 이하
기회균등전형	입학금 수업료	전액 지원 (교육급여)	지자체 1/2 교육청 1/2	교육청 전액 지원	교육청 전액 지원
	학교운영지원비	교육청 지원 (96,800원 이내)+ 차액 본교 지원(학교장 지원)			
사회다양성전형 일반전형	입학금 수업료	전액 지원 (교육급여)	지자체 1/2 교육청 1/2	교육청 전액 지원	교육청 지원 (362,700원 이내)
	학교운영지원비	교육청 지원 (96,800원 이내)			

※ 특수교육대상자 학비 지원 사업은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시행'으로 2021학년도부터 단계별 종료
- 특수교육대상자도 「2022학년도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기본 계획」 지원 기준에 따름

○ 수익자부담경비 지원

- 지원항목 및 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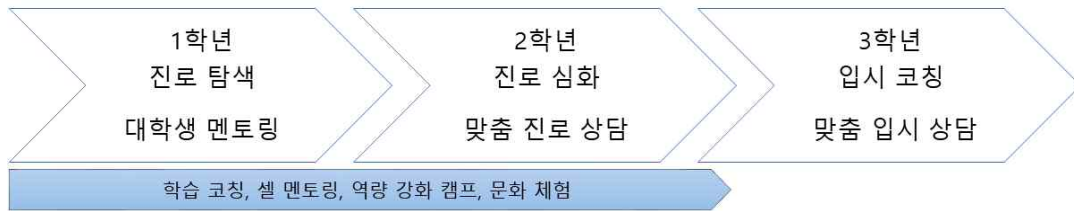
지원 항목	입학 전형	지원 자격		대상 확인
[총 3종] ①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비 ② 수련활동비 ③ 앨범비	공 통 (입학전형 무관)	법 정 저소득 자 격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NEIS > 학생복지 > 교육비지원 > '심사관리'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기회균등 전형 입학자	소득인정액 기 준	중위소득 50%이하	
	공 통 (입학전형 무관)	기타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나 그 자녀	

- 항목별 지원 단가

지원 항목	단가
1.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비	1인당 400,000원 이내 실비
2. 수련활동비	1인당 140,000원 이내 실비
3. 앨범비(3학년)	1인당 50,000원 이내 실비

※ 법정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은 학기 중 법정 저소득자격을 상실되더라도 당해 학년도 말까지 계속 지원

나. 사회통합전형 학생 맞춤형 적응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명	내용	기대 효과
1학년 대학생 멘토링	본교 졸업 우수 대학생 선발, 소규모 과목별 그룹 멘토링	학업 내용 지도 및 조언은 물론 친근한 선배와의 대화를 통해 학업 및 학교 적응력 제고
1학년 학습 코칭	플래너 작성법, 학습 습관 점검, 과목별 학습법, 내게 맞는 입시 제도의 이해와 준비 등 입시와 관련된 전문적 코칭	학습 계획부터 진행 상황, 수시 및 정시 대비, 학교 생활에의 적응까지 완벽 대비
2학년 진로 코칭	관심 진로 분야 전문가 선생님과 소규모 그룹 상담으로 진행하는 전공 전문화 상담	진로 희망을 심화, 확장하기 위한 생활 습관 및 입시 전략 집중 도움
3학년 입시 코칭	수시, 정시, 지원 학과, 지원 대학 정보 및 면접 준비까지 전문화된 입시 컨설팅	전문성을 갖춘 교사단을 중심으로 학교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맞춤 입시 지도
Cell멘토링 프로그램	1, 2학년 재학생간의 친목 및 학업 경험 공유	봉사활동 시간 부여, 상호 성장을 통해 즐거운 학교 생활과 의지 할 수 있는 선후배 관계 도모
문화체험, 역량강화 프로그램	자연 속 숲 체험, 스포츠 활동, 공연 관람 등 문화 생활을 만끽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마음의 여유 및 한층 성숙한 문화생활 향유를 통해 긍정적인 생활 습관과 학업 동기 도움

※ 상기 프로그램은 교육청의 예산 지원과 본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장학금 지원

구분	내용	대상(백분위)	지원내역	
고향인재 I (사회통합전형)	중학교 내신	상위 1%	매월 30만원(1학년 1학기)	
		상위 1%~3%이내	매월 20만원(1학년 1학기)	
		상위 3%~5%이내	매월 10만원(1학년 1학기)	
고향인재 II (기회균등전형)	모의고사 (국어, 수학)	99%	매월 30만원 (1학년 2학기부터 지급)	
		98%	매월 20만원 (1학년 2학기부터 지급)	
		95%	매월 10만원 (1학년 2학기부터 지급)	
	중학교 내신	상위 20% 이내	입학금/수업료 국가 및 지자체 부담	매학기 100만원 + 스쿨버스무료지원
		상위 50% 이내		매학기 50만원 + 스쿨버스무료지원
		상위 80% 이내		매학기 30만원 + 스쿨버스무료지원
		상위 100% 이내		매학기 10만원 + 스쿨버스무료지원
	고향인재 III (사회다양성전형)	중학교 내신	상위 20% 이내	6개 학기 등록금 전액
상위 50% 이내			6개 학기 등록금 반액	
상위 80% 이내			6개 학기 매학기 70만원	

① 가구원 수 산정 시 유의사항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해당 학생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부모 및 2촌 이내의 형제·자매 [※(외)조부, (외)조모 제외]
 - ※ 가족관계증명서상 부모 또는 미혼인 형제·자매는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 ※ 기혼인 형제·자매의 경우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경우 포함(※ 최소 원서 접수 6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경우), 주민등록을 같이 하지 않은 경우 미포함
-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 가정의 경우 이혼한 배우자(친부 또는 친모)를 가구원 수에 포함

②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확인 시 유의사항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에 부모 중 1명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반드시 제출)에 부모가 모두 있는데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학생만 있거나 부모 중 한 명만 있는 경우 반드시 부 또는 모의 건강보험료 금액을 확인하여 부모의 건강보험료 합산(※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 가정의 경우 친부와 친모 건강보험료 합산)
- 학생이 직장에 다니는 형제자매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에도 부모의 건강보험료 납부 실적을 확인하여 합산

③ 산정 및 적용

- (산정) 건강보험증에 부양자로 등록된 부모의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을 합산한 금액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
 - 소득이 없는 달(한시적으로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들어간 경우)은 기간에 산정하지 않음
 - 휴직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납부 유예 시 휴직 전 납부된 건강보험료로 산정
 - ※ 입학 지원서 제출 당시 복직한 경우 복직 후 납부한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을 6개월 평균 건강보험료로 산정
- (적용)
 - ※ 부모가 각각 다른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부와 모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
 - 부모가 각각 지역건강보험 부양자인 경우 : 합산 후 지역보험료 기준 적용
 - 부모가 각각 다른 직장건강보험 부양자인 경우 : 합산 후 직장보험료 기준 적용
 - 부모가 각각 지역건강보험과 직장건강보험 부양자인 경우 : 합산 후 혼합보험료 기준 적용
- (사례)

아버지는 직장건강보험 부양자로 4만원 납부하고 어머니는 지역건강보험 부양자로 2만2천원 납부하는 4인가구의 경우 : 4만원(부)+2만2천원(모)⇒가구 건강보험료(혼합 6만2천원)

■ 가구원수별 중위소득 160% 이하 증명

○ 건강보험료 납입금(최근 6개월 평균액) 및 재산세 기준 적용

※ 2021년 4월 건강보험 연말정산금액은 합산에서 제외

■ 건강보험료 납입금 및 재산세 납부금액 확인 시, 부모 모두 확인하여 합산(이혼으로 인한 '한부모가족'의 경우 이혼한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납입금 및 재산세 납부금액을 확인·합산하여 제도 도입 취지에 맞는 적격자 추천)

■ 가구원수별 중위소득 160% 건강보험료 및 재산세 납부금액 적용 기준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단위: 원)			재산세납부금액* (단위: 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170,536	174,281	171,997	561,150
3인	220,987	238,835	224,800	899,760
4인	270,748	300,338	278,094	1,242,480
5인	321,769	356,168	337,302	1,580,880
6인	380,152	420,252	414,255	1,915,440
7인	414,255	456,308	449,388	2,249,040
8인	486,115	531,814	540,144	2,582,400
9인	540,144	583,151	634,303	2,916,000
10인	634,303	661,710	816,530	3,249,600

출처: 「2021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보건복지부, '20.12.) 및 서울특별시 가구원수별 소득에 따른 재산세 납부금액

※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산정 시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재산세 납부금액은 주택(아파트) 재산세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며,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임

- 총재산세(주택 기준) = 재산세+도시지역분+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

* 재산세는 전국에 소유한 모든 주택(아파트)에 대한 납부금액을 합산한 금액이며, 토지, 상가 등에 대한 재산세는 미포함

구분	순위	지정 대상자	비고
기회균등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법정차상위대상자로서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상위 자활 대상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차상위 장애 수당 대상자, 차상위 장애 연금 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로 주민자치센터에 등록된 가구의 구성원 	증명서 및 확인서 제출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교육급여수급자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교육비지원 대상
		○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법정차상위대상자, 기준 중위소득 50% 및 60% 이하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학교장이 판단·추천한 자 	학교장 추천
		○ 교육지원대상자 외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보훈자 자녀
사회다양성전형	1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 및 제14조의2에 따른 다문화가정의 자녀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영재학교(서울과학고등학교), 과학계고(세종과학고등학교, 한성과학고등학교), 예술계고(국립국악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덕원예술고등학교,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서울예술고등학교, 선화예술고등학교), 일반고 중 예·체능계고(서울미술고등학교)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사회통합전형이 아닌 별도 전형계획에 의거 전체 모집 인원의 2~3% 범위에서 정원 외로 선발함 ○ 「아동복지법」 제3조 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아동 ○ 「도사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사벽지의 거주자로서 도사벽지 중학교 졸업(예정)자 ○ 소년소녀 가장/ 조손가정 자녀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자녀 ○ 순직군경, 순직공무원, 순직교원 자녀 	2021년 가구원수별 중위소득 160% 이하
	2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2호에 따른 한부모 가정 자녀 ○ 다자녀가정(3자녀 이상) 자녀 ○ 특수직업 종사자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미화원 자녀(사·도 또는 군·구 소속 미화원) - 군인(15년 이상 재직 중인 준부사관 이하) 자녀 - 경찰(15년 이상 재직 중인 경위 이하) 자녀 - 소방공무원(15년 이상 재직 중인 소방위 이하) 자녀 ○ 기타 학교에서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로 신청한 유형 중 교육감이 사회통합전형 제도 도입의 원칙과 기준을 고려하여 승인한 자 	가정 자녀
보훈자 자녀전형 (정원 외)		○ 국가보훈처에서 교육지원대상자로 지정되거나 교육지원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학비 면제 대상

* 지원 당시 소속 중학교 관할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에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

참고 자료 4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확인 증빙 서류

지원유형	구분	제출서류	발급처	
	공통	○ 주민등록등본 ○ ‘부’ 또는 ‘모’ 기준 가족관계 증명서	동주민센터	
기 회 균 등 전 형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수급자증명서 또는 교육급여수급자증명서	구청, 동주민센터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증명서	구청, 동주민센터	
	법 정 차 상 위 대 상 자	차상위자활대상자	○ 자활급여 대상자 확인서	구청, 동주민센터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차상위장애수당대상자	○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구청, 동주민센터
		차상위장애연금대상자	○ 장애연금 대상자 확인서	구청, 동주민센터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	○ 차상위계층 확인서	구청, 동주민센터
	기준중위 소득50% 이하 · 기준중위 소득60% 이하	기준중위소득50%이하	○ 교육급여수급자증명서	구청, 동주민센터, 학교(교육청)
		기준중위소득60% 이하	○ 교육비지원확인서	학교
	학 교 장 추 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6개월 평균 납부액*) ○ 경제적 형편이 곤란함을 증빙하는 기타 제반 서류 -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내역서(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 채권압류통지서, 법원 파산결정문 사본, 폐업확인서, 급여명세서, 병원 진단서, 장애인 등록증, 근로소득원천 징수영수증 등 - 부모의 사망, 이혼, 별거, 가출, 연락두절 기타 가정형편으로 부모의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학교장 추천서」 또는 「자기확인서」에 동 사실을 명기 - 어느 한 가지 서류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재산세 과세증명 등을 받아 종합적으로 판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 해당 증빙서류별 확인 가능한 곳
보훈자 자녀 전형		교육지원대상자 외 국가보훈대상자	○ 교육지원대상자 외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원	관할 보훈지청
사 회 다 양 성 전 형	공통 (가구원별 중위소득 160% 이하)	지역건강보험료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사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6개월 평균 납부액*)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
		직장건강보험료, 혼합(지역+직장)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6개월 평균 납부액*) ○ 재산세(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1부 ※ 반드시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전국)’으로 발급받아 제출(동주민센터 방문 발급, 온라인 발급 불가)	
	1순위	다문화가정 자녀	○ 부 또는 모의 기본증명서(상세)	해당서류

지원유형	구분	제출서류	발급처
	북한이탈 주민 또는 그 자녀	○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발급기관
	특수교육대상자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통지서 사본(원본대조필) 1부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아동	○ 아동보육시설 재원증명서 1부	
	도서·벽지의 중학교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증명서 1부	
	소년·소녀 가장, 조손가정의 자녀	○ 사실 관계 확인서(주민센터 복지사 확인 등) 1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녀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원본대조필) 1부 ※ 2019년7월1일 이전 발급 장애인 등록증: 장애 1~3급	
	순직군경, 순직공무원, 순직교원의 자녀	○ 순직군경, 순직공무원, 순직교원 자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2순위	한부모가정 자녀	○ 추가서류 필요 없음. (단, 공통서류인 가족관계 증명서를 '상세' 로 발급받아 제출)	해당서류 발급기관
	다자녀가정 (3자녀 이상) 자녀	○ 추가서류 필요 없음. (공통서류인 가족관계 증명서로 확인함.) ※ 단, 입양으로 인한 다자녀가정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상세)로 제출	
	환경미화원의 자녀 (사도 또는 군구 소속 환경미화원)	○ 재직증명서 1부	
	군인 자녀 (준·부사관 이하)	○ 재직증명서 또는 15년 이상 근무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서류	
	경찰 자녀 (경위 이하)		
	소방공무원 자녀 (소방위 이하)		
정원외	보훈자 자녀 중 교육지원대상자	○ 국가보훈처에서 교육지원대상자로 지정하여 통보된 자는 추가 제출 서류 없음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통보 이후 지정된 경우)	관할 보훈지청

※ 증빙서류는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 발급한 서류에 한함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은 영수증, 고지서, 납부확인서 중 택 1

※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지원자는 이에 성실히 협조해야 함

대상자	근거	증명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및 제2호 	독립유공자(유족) 확인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3호~제18호, 제73조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수당지급대상자) 및 그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18민주유공자 및 그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제3호 	5·18민주유공자 (유족) 확인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제3호 	특수임무유공자 (유족)확인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제4호 	보훈보상대상자 (유족)확인원

※ 국가보훈처에서 교육지원대상자로 지정되거나 교육지원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는 정원 외 보훈자자녀전형 대상으로 별개 사항임

개인정보 활용 고지

본 전편입학원서에 기재된 지원자의 개인정보는 전편입학관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도록 한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집.이용.제공됩니다.

1. (개인정보 처리의 법령상 근거)

본 전편입학원서에 기재된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는 초.중등교육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 제82조, 제84조, 제98조 및 본교의 입학전형 실시계획 등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2. (정보주체의 권리)

지원자는 자신이 제공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 및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에 따라 열람.처리.정지.정정.삭제.파기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한 손해 발생시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 수집항목)

전편입학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증명사진, 주소, 전화번호, 학력, 출결사항.교과성적 등입니다.

4.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한 지원자의 개인정보는 원서접수, 지원자격.지원결격 사유 확인, 지원자 본인확인, 성적산출, 합격자 명부 관리, 합격증명서 발급, 성적 통지, 통계자료 산출 등 입학관리 업무를 위한 정보로 이용됩니다.

5. (개인정보 제공)

수집한 개인정보는 지원자격.지원결격 사유 조회 및 교과성적 확인 등을 위하여 지원자가 졸업한 중학교 등 관련된 기관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6.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입학관리 업무를 계속하는 동안 보유.이용할 수 있으며, 입학관리 업무 완료 후 본인의 삭제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모두 삭제됩니다.

7.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 거부)

지원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지원결격 사유 조회 등 입학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전 · 편 입 학 원 서

접수번호	
------	--

인적 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 번호	부모님 휴대전화				본인 휴대전화	집 전화
전형 구분	일반전형	() * 해당자 ○표기					
	사회통합 전형	사회통합 전형 *해당자 ○표기 혹은 내용 기재	기회균등 전형	60% 우선	유형 ()		
			사회다양성 전형	1순위	유형 (), 소득분위 ()		
				2순위	유형 (), 소득분위 ()		
	정원 외 전형	고입특례대상자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호 ()목 대상자				
국가유공자자녀		교육지원대상자 ()					
학력 사항	학력사항	()중학교 년 월 일 졸업					
		고입자격 검정고시 년 월 지구 합격					
		외국 중학교 졸업자 년 월 ()국 ()주 ()학교 학년 졸업					
		현재 () 고등학교 () 학년 () 반 재학 중					

본인은 자율형 사립고 경희고등학교에 전·편입학하고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지원합니다.

20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

서명(인):

보호자 성명 :

서명(인):

경희고등학교장 귀하

[붙임4]

귀국자 편입학(취학·재취학) 신청서										
지원자(학생)	성명		성별		국적(비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국내최종학력	년 월 일까지 ()학교 ()학년 (재학·수료·졸업)								
	국외학력	국명	학교명	재학기간		재학학년	국내해당학년	정규교육여부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간)		()학년 (재학·수료)	(초·중) ()학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간)		()학년 (재학·수료)	(초·중) ()학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간)		()학년 (재학·수료)	(초·중) ()학년				
특례귀국자	관계	성명	거주국가명	재외국민등록기간	실체체류기간	국외근무처				
	본인			(년 개월 일) ~ (년 개월 일)	(년 개월 일) ~ (년 개월 일)					
	부			(년 개월 일) ~ (년 개월 일)	(년 개월 일) ~ (년 개월 일)					
	모			(년 개월 일) ~ (년 개월 일)	(년 개월 일) ~ (년 개월 일)					
	출입국 년월일	지원자	출국	년 월 일	보호자	출국	년 월 일			
		입국	년 월 일	입국		년 월 일				
보호자	성명		국적(비자)		연락처					
희망학교	1지망		2지망		3지망					
상기와 같이 귀국하여 취학·재취학(편입학)하고자 하오니 제 ()학년에 배정하기를 희망합니다. 단, 위의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지원자 (서명 또는 인) 보호자 (서명 또는 인)										
경희고등학교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 서명란】 -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주민등록등본, 출입국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를 열람하는데 동의합니다. ※ 만일 이 처리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경우, 편입학 담당자가 요청하는 구비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자:	(서명 또는 인)			
						보호자:	(서명 또는 인)			

[붙임5]

확 인 서

성 명 :

생년월일 : 년 월 일

주 소 :

연락처 :

외국학교명 :

(시트명 : / 행 번호 :)

위 학생의 귀국자 편입학 학적 서류는 외국학교의 재적학교장이 발급한 학적 서류임을 확인하며, 만약 위·변조 서류로 확인될 경우에는 입학취소 등 모든 행정처분에 따를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학생과의 관계 :

성명 :

서명 또는 (인)

경희 고등 학교장 귀하

※ 교육부 홈페이지 (메인>정책정보공표>초·중·고 교육>외국소재 초중고 학력인정학교 목록)

※ 공시된 엑셀파일에서 학교를 찾아 시트명(예> 베트남, 사우디 등), 행 번호(예> 6행) 기재

[붙임6]



2022학년도 경희고등학교 전·편입 사회다양성 전형

목회자 또는 해외선교사 증명서

발급번호	2021 -
------	--------

학생	성명		출신 학교		생년월일			
학부모	성명		직급	담임목사	부목사	교목	해외 선교사	전도사
	근무지							
	교회주소							
	근무기간							
	연락처	교회					주택	

위 학생의 부모(목사, 해외선교사, 전도사)는 본 교단 소속의 목회자임을 증명합니다.

※ 목회자란 : 개신교 4년제 정규 신학대학교를 졸업하고 교단에서 목사안수를 받았거나 교회, 학원, 선교기관에서 근무하는 자로 교단에서 목회자 증명서를 받을 수 있는 자

20 년 월 일

() 노회장 (감리사, 감독, 총회장) (직인)

경희고등학교장 귀하